

제290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일반의안
(3건)

거창군

---- 목 차 ----

의안번호	건명	페이지
2025 - 199	경남연구원 출연안(기획예산담당관)	1
2025 - 200	2026년 거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재무과)	6
2025 - 201	거창스포츠파크 내 실외 골프연습장 민간위탁 동의안 (체육시설사업소)	22

경남연구원 출연안

의안
번호 2025 - 199

제출자 거창군수

1. 제안이유

가. 군의 당면 주요 현안 과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전략적 정책 발굴을 위해 경남도 출연기관인 (재)경남연구원에 출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출연개요

1) 출연대상 : 경남연구원

2) 사업내용

- 거창군 군정 방향에 부합한 부문별 비전·전략을 제시하는 정책연구
- 거창군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 발굴 등

나. 출연금 요구액 : 50,000천원

1) 2026년 예산편성 요구사항

(단위 : 천원)

사업기간	2025년 예산액	2026년 요구액	재 원 별				
			계	군 특	도 비	군 비	기 타
2026년	50,000	50,000	50,000	0	0	50,000	

다. 부서의견

1) 경남연구원의 정책연구 성과 등을 활용하여 거창군의 인구, 관광, 문화, 농업 등 분야별 거창군 발전 전략 마련을 위한 정책 기획연구를 추진하기 위해 출연금 지원 필요

3. 관계법령

- 1)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8조
- 2)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 3)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
- 4) 「경남연구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의2

4. 참고사항

○ 출연기관 현황

□ 지방재정법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591호, 2023. 8. 8., 타법개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 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4. 5. 28.>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 5. 28.>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 ③ 삭제 <2013. 7. 16.>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 5. 28.>
-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 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신설 2014. 5. 28.>
-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4. 5. 28.>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약칭: 지방출자출연법)

제20조(재정 지원)

-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 출자·출연 기관에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4조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출자·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을 할 수 없다.
- ③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교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약칭: 지방연구원법)

제13조(운영재원)

- ① 지방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영한다.
 1. 제2항에 따른 출연금 및 보조금
 2. 제14조에 따른 수익사업으로 생긴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연구원에 필요한 출연금 및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교부할 수 있다.
- ③ 지방연구원의 재산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 5. 30.]

□ 경남연구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23. 8. 3.] [경상남도조례 제5503호, 2023. 8. 3., 일부개정]

제5조의2(운영재원) <본조신설 2019.6.7.>

- ① 연구원의 운영경비는 기금의 과실 및 연구원의 수익금 등으로 충당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연구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금 및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설립목적

- 지역경제·사회발전, 지역발전 분야에 관한 제반과제에 대한 현실적 이며, 체계적인 조사 연구활동을 통하여 지역단위의 정책개발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과 지역경제·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설립근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 「민법」 제32조,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동법 시행령 제5조
- 「경남연구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연혁

- 1992. 07. 18. : 재단법인 설립 허가
- 1992. 08. 05. : 재단법인 설립 등기
- 1992. 12. 10. : 경남개발연구원 개원
- 2000. 03. 08. : 경남발전연구원 명칭 변경
- 2019. 07. 15. : 경남연구원 명칭 변경

□ 주요기능

- 경남의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및 정책개발
- 자치분권과 경남지방정부 발전 연구
- 지역경제 및 산업정책 연구·개발 및 미래 첨단신기술 전략 연구
- 도시계획·교통·환경·문화·관광·농어촌 분야의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개발
- 재정·민자 투자사업의 타당성 분석 및 조사·연구
- 여성의 지위 향상과 사회참여 확대·강화를 위한 여성정책 개발
- 경남의 얼 고취 및 역사문화 정책개발과 문화유산의 발굴·보존
- 지역발전을 위한 국내 및 국외 협력 강화와 관련 연구
- 기타 연구원 고유업무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 조직 현황[6실 2센터]

02

경남연구원 조직 구성

Organization



6실
2센터



2026년도 거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안 번호	2025 - 200
----------	------------

제출자	거창군수
-----	------

① 2026년 산불진화임도 신설사업(가조수월지구)

1. 제안이유

- 임도를 신설하여 산불과 산악 사고에 신속히 대응하고 임산물 운반 등 산림경영의 효성을 높이며, 더불어 항노화 힐링랜드와 고견사 방문객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업개요

- 사업비 : 1,999백만원(국 1,399, 도 300, 군 300)
- 위치 : 가조면 수월리 산11, 산12일원
- 기간 : 2026. 2. ~ 12.
- 사업 내용 : 임도 신설 2.46km
 - 콘크리트포장 1.42km, 반중력식 옹벽 127m, 토사절취 11,924m² 등

나. 취득(또는 처분)재산 세부내역

(단위:m², 천원)

구분	재산 종별	재산의 표시				기준가격	취득 시기	취득 사유	용도 지역
		소재지	지목	면적	편입면적				
계				373,042	6,678	3,625			
취득	토지	가조면 수월리 산11	임	301,141	2,588	1,453	2025 ~ 2026	임도 개설	농림 지역
		가조면 수월리 산12		71,901	4,090	2,172			

* 임도 편입 예정지 부분 매입

- * 기준가격 산정 근거 : 공시지가 * 면적
 - 가조면 수월리 산11 m²당 561원
 - 가조면 수월리 산12 m²당 531

다. 추진경과

- 1) 2024. 12. 20. : 타당성 평가 실시
- 2) 2025. 5. 16. : 실시설계 완료
- 3) 2025. 9. 8. : 문화유산 변경허가

라. 향후계획

- 1) 2025. 11. : 감정평가 및 토지보상 협의
- 2) 2025. 12. : 토지보상 및 등기 완료
- 3) 2026. 2. : 사업 착공
- 4) 2026. 12. : 사업 준공

마. 기대효과

- 산림재해 예방 및 신속 대응으로 항노화힐링랜드 등 산림휴양시설과 고견사 등의 문화유산 보호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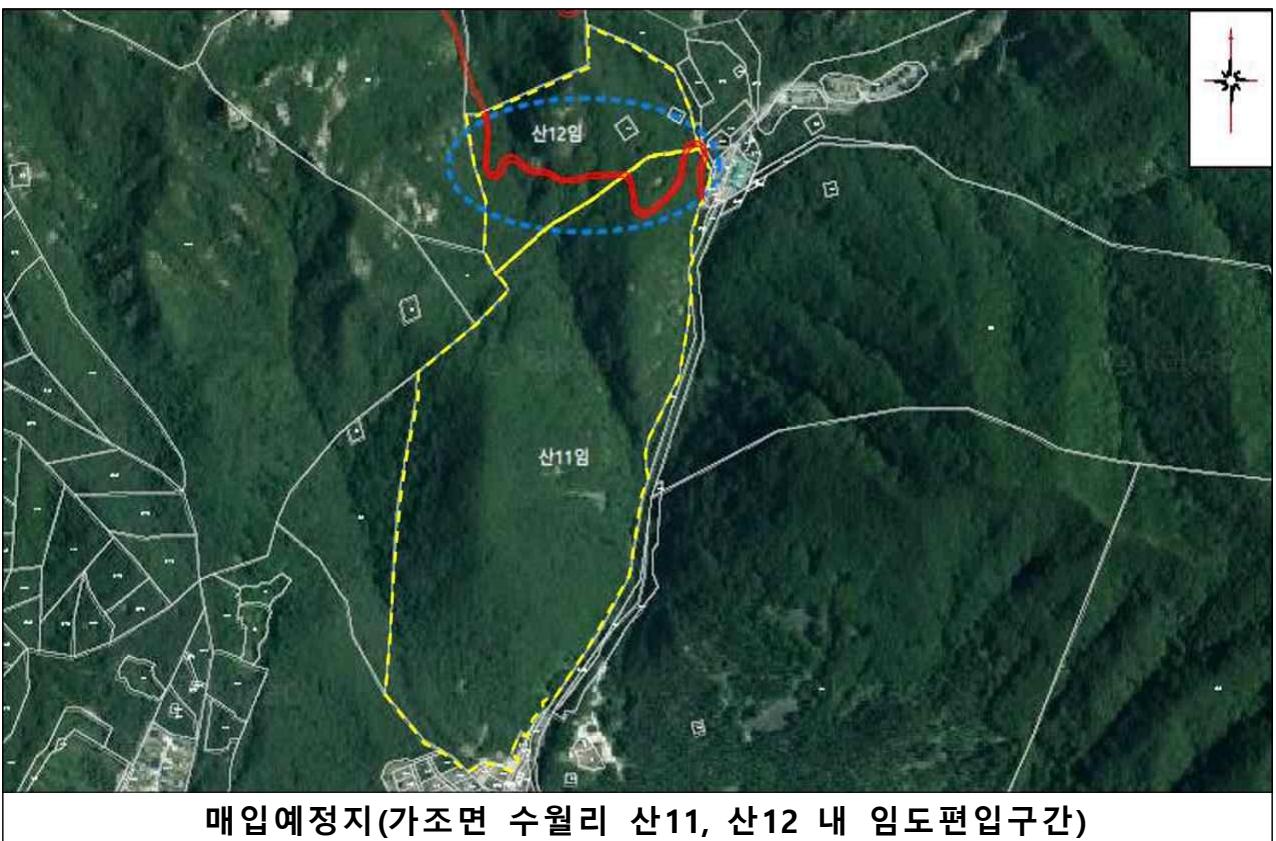
3. 위치도 및 현장사진 : [붙임1] 참조

4. 관계법령 : [붙임2] 참조

-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제16조
- 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
- 3)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5조 및 시행규칙 제7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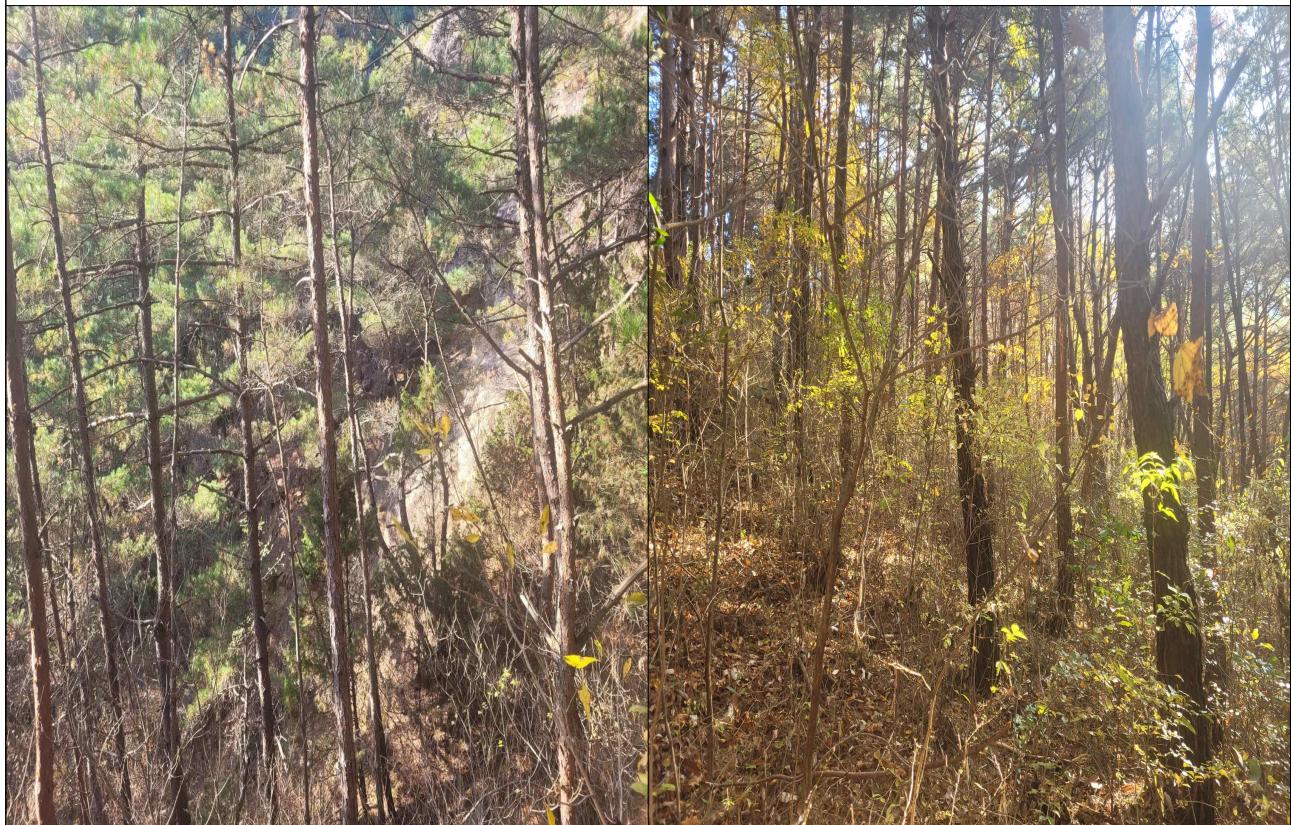
붙임1

위치도 및 현장사진





현장사진(가조면 수월리 산11)



현장사진(가조면 수월리 산12)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 까지,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55조에 따른다.

④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16조(공유재산심의회) ①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문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유재산심의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라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2. 제11조에 따라 행정재산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
3. 제11조에 따라 일반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
4. 제12조 단서에 따라 무상으로 회계 간의 재산 이관을 하는 경우
5. 제24조 또는 제34조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
6. 그 밖에 공유재산의 관리·처분 등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가격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재산

2.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면적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면적 이상인 토지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해야 한다.

1. 사업목적 및 용도

2. 사업기간

3. 소요예산

4. 사업규모

5. 기준가격 명세

6. 계약방법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따른 무상 귀속

2. 「도시개발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환지

3. 법원의 판결에 따른 소유권 등의 취득 또는 상실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득(「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나목 또는 마목의 기반시설을 설치·정비 또는 개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처분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1조에 따른 무상양여

6.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대한 공장용지 매각

7. 지방의회의 의결 또는 동의를 받은 재산의 취득·처분

8. 「지방세법」 제117조에 따른 물납

9. 다른 법률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적용이 배제된 재산의 취득·처분

10.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취득·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의 취득·처분

11.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허가 또는 사업승인 시 조건에 의하여 주된 사업대상물에 달린 공공시설의 취득

12. 공유재산을 종전과 동일한 목적과 규모로 대체하는 재산의 취득

□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5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군수는 법 제10조2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군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재산관리관의 공유재산 취득·처분(안)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이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공유림에 대하여는 공유림을 관리하는 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취득·처분하여야 할 재산에 대하여는 그 소관으로 할 재산관리관이 사전에 총괄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재산관리관은 제3항에 따라 취득·처분하여야 할 재산이 확정되거나 변동이 있으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영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 및 처분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

2. 1건당 기준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2천제곱미터

□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7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하여야 하는 공유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부서의 장은 그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련한 계획을 세운 후 지체 없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반영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거창창포원 생태관광문화복합사업(건물의 신축)

1. 제안이유

- 1) 거창창포원과 연계한 관광인프라 시설 확충을 통해 미래경쟁력을 갖춘 국내 제일의 생태관광 명소 조성
- 2) 국민의 관광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창포문화관, 야외공연장, 다목적 놀이마당 등이 한 곳에 어우러진 생태·문화 복합시설로 운영

2. 주요내용

가. 사업개요

- 1) 사업명 : 거창창포원 생태관광문화복합사업
- 2) 사업비 : 13,580백만원 (전환 5,500, 도 1,650, 군 6,430)
- 3) 사업기간 : 2023. ~ 2027.(5년간)
- 4) 위치 : 거창군 남상면 월평리 2273번지 등 7필지 일원
- 5) 사업량 : 조성면적 15,678m²(연면적 2,000.3m²)
- 6) 사업내용 : 창포문화관, 야외공연장, 다목적놀이마당 등

나. 취득재산 내역

- 1) 취득내역 (단위:m², 천원)

구분	재산 종별	재산의 표시			기준가격	취득 시기	취득 사유	재산 소유자
		소재지	지목 (형식)	연면적				
취득 (신축)	건물	남상면 월평리 2273번지 등 7필지 일원	건물 1동	2,000.3	11,439,000	2027	거창창포원 생태관광 문화복합 사업	거창군

2) 주요시설

층 별	세부시설	연면적(m ²)	비고
계		2,000.3	
지상2층	사무실, 부속실, 세미나&회의실, 휴게실, 계단&EV실, 화장실 홀&복도	549.95	
지상1층	전시실, 컨벤션홀, 시청각실, 부속실, 휴게실, 화장실, 로비&복도, 계단실&EV실, 필로티&캐노피	1,309.55	
지하1층	기전실, 계단실	82.5	
별동	경비실	14.40	
	야외무대	43.90	

다. 추진경과

- 1) 2020. 11. : 확장계획에 따른 공유재산 심의(원안가결)
- 2) 2021. 11. : 군관리계획 결정 용역 착수
- 3) 2022. 3. : 제7차 경남권 관광개발계획 반영
- 4) 2023. 1. : 거창군계획위원회 심의·자문(원안수용)
- 5) 2023. 3. : 제2회 지방재정 투자심사 의뢰(2023. 5. 22. 조건부 승인)
- 6) 2023. 9. :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조건부)
- 7) 2023. 11. : 거창군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유원지 조성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8) 2024. 5. :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 9) 2024. 12.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
- 10) 2025. 7. : 유원지 조성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인가 신청
- 11) 2025. 7. ~ 10. : 각종 인허가 관련 부서 협의

라. 향후계획

- 1) 2025. 11. : 유원지 조성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
- 2) 2025. 11. : 토지수용 재결신청(지방토지수용위원회)
- 3) 2026. 1. ~ 3. : 지방재정투자 심사(1차) 의뢰(군→도) 및 승인
- 4) 2026. 1. : 경상남도계약심사 및 군계약심의위원회 심의
- 5) 2026. 3. : 보상금 공탁 및 소유권 이전
- 6) 2026. 4. ~ 2027. 12. : 공사 착공 및 준공

마. 기대효과

- 1) 거창창포원과 연계한 관광인프라 확충을 통한 국가정원 지정의 기틀을 마련함과 더불어 국내 제일의 생태관광지로 발돋움
- 2) 국민의 다양한 관광욕구 충족을 통한 경제활성화 및 생활인구 증가

3. 사업비 세부내역 : [붙임1] 참조

4. 위치도 등 : [붙임2] 참조

5. 관계법령 : [붙임3] 참조

-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제16조
- 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
- 3)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5조 및 시행규칙 제7조

불임1

사업비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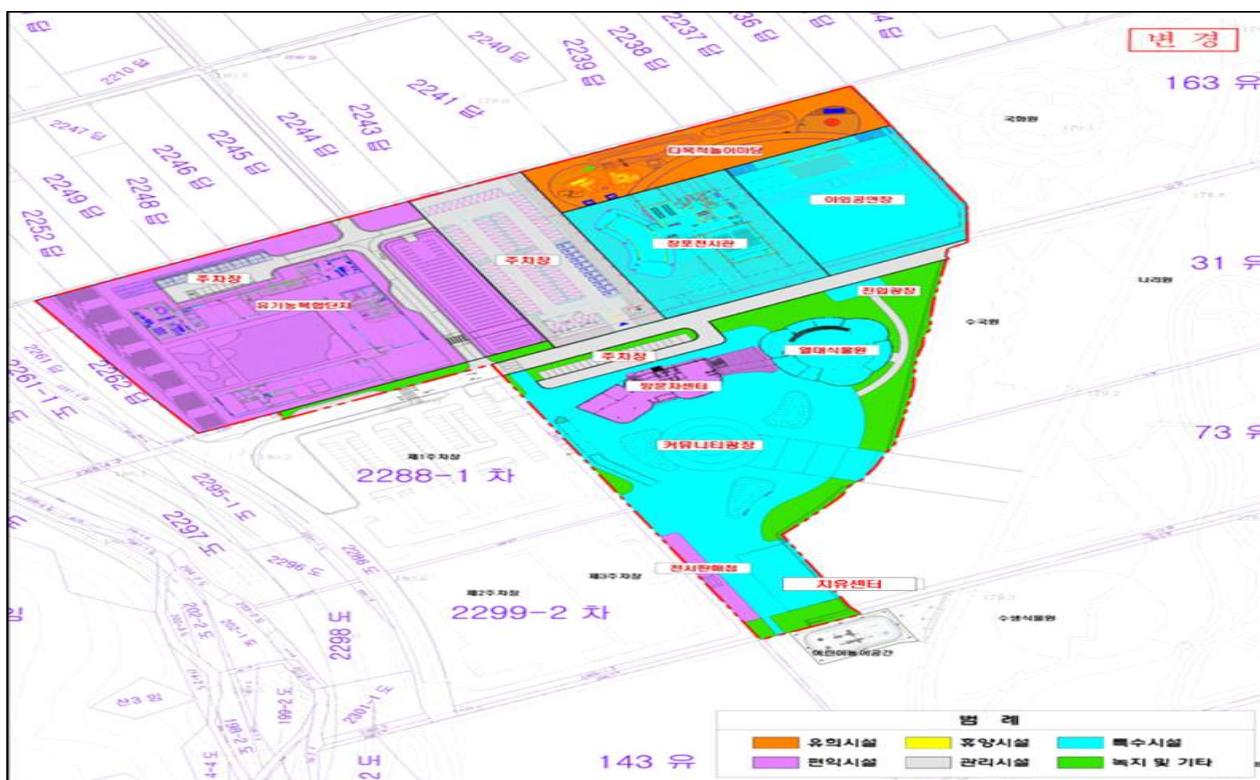
구 분	산 출 기 초	금 액	비 고
총 계		13,580	
공사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비 : 9,939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합건축(토목,조경,건축,기계)공사비 : 8,260백만원 - 전기 공사비 : 940백만원 - 소방 공사비 : 370백만원 - 통신 공사비 : 369백만원 • 전시실 설치(별도) : 1,500백만원 	11,439	
설계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계비 : 515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 515백만원 	515	
부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계공모 보상금 : 52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계공모 보상금 지급 : 52백만원 • 인증수수료 : 38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로에너지 건축물 예비인증 수수료 지급 : 4백만원 - 장애물 없는 생활(BF) 예비인증수수료 납부 : 2백만원 - 농지보전부담금 납부 : 32백만원 • 보상비 : 1,329백만원 	1,419	
부대 용역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대 용역비 : 207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기획 및 설계공모 관리용역 : 17백만원 - 매장문화재 시굴조사 용역 : 25백만원 - 지반조사 및 현황측량 용역 : 19백만원 - 손실보상 지원용역 : 8백만원 - 지반조사 용역 : 8백만원 - 소규모환경향평가 용역 : 19백만원 - 소규모재해영향평가 용역 : 20백만원 - 거창군관리계획(유원지) 변경 용역 : 5백만원 - 지반조사 용역 : 8백만원 - 군관리계획 결정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 42백만원 - 군관리계획결정 및 조성계획 재해영향성검토 용역 : 20백만원 - 건축기획 및 설계공모관리용역 : 16백만원 	207	

붙임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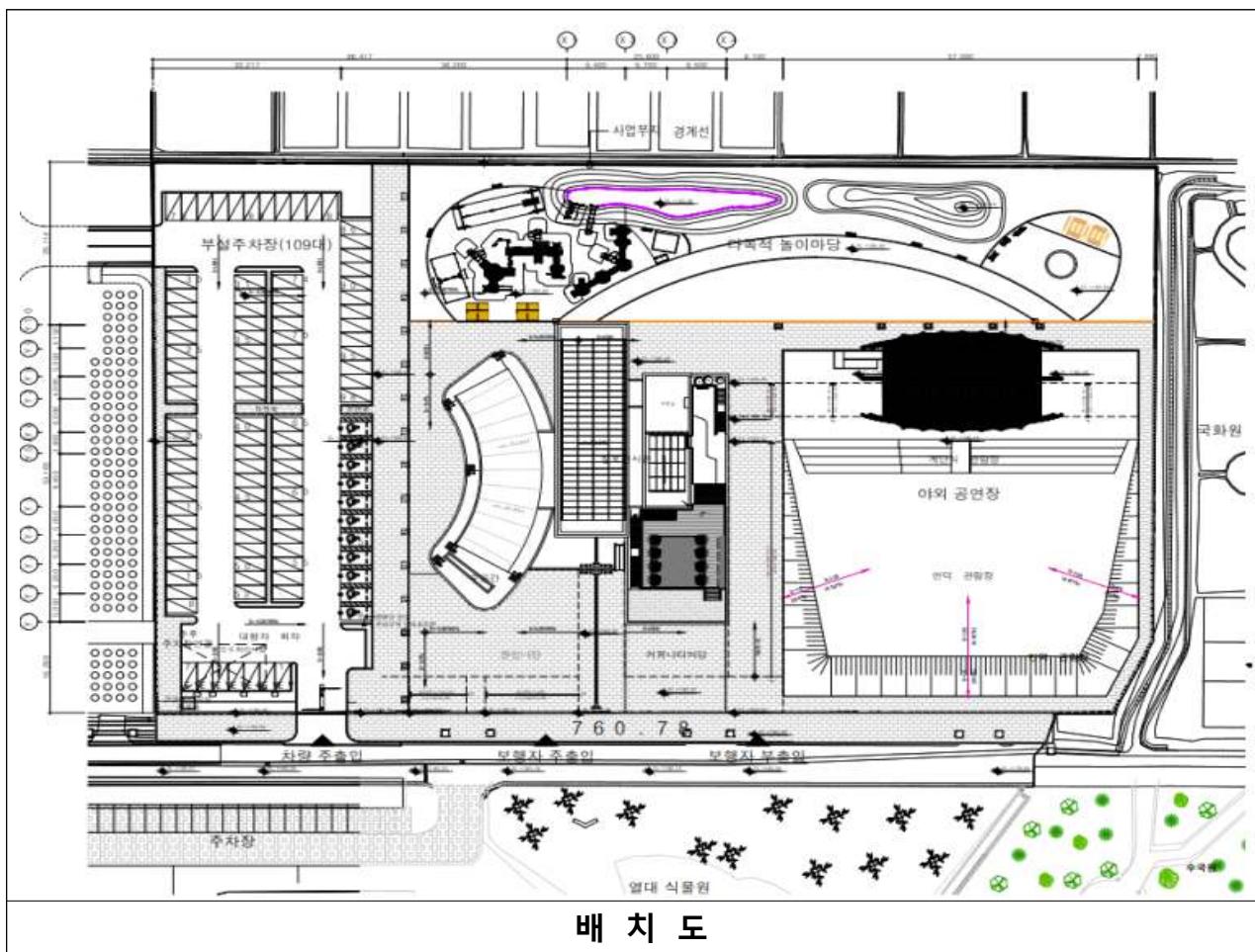
위치도 등



위 치 도(남상면 월평리 2273번지 일원)



조 감 도



배치도



조감도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 까지,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55조에 따른다.

④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16조(공유재산심의회) ①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문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유재산심의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라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2. 제11조에 따라 행정재산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
3. 제11조에 따라 일반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
4. 제12조 단서에 따라 무상으로 회계 간의 재산 이관을 하는 경우
5. 제24조 또는 제34조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
6. 그 밖에 공유재산의 관리·처분 등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가격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재산

2.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면적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면적 이상인 토지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해야 한다.

1. 사업목적 및 용도

2. 사업기간

3. 소요예산

4. 사업규모

5. 기준가격 명세

6. 계약방법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은 공유재산관리 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따른 무상 귀속

2. 「도시개발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환지

3. 법원의 판결에 따른 소유권 등의 취득 또는 상실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득(「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나목 또는 마목의 기반시설을 설치·정비 또는 개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처분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1조에 따른 무상양여

6.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대한 공장용지 매각

7. 지방의회의 의결 또는 동의를 받은 재산의 취득·처분

8. 「지방세법」 제117조에 따른 물납

9. 다른 법률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적용이 배제된 재산의 취득·처분

10.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취득·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의 취득·처분

11.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허가 또는 사업승인 시 조건에 의하여 주된 사업대상물에 딸린 공공시설의 취득

12. 공유재산을 종전과 동일한 목적과 규모로 대체하는 재산의 취득

□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5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군수는 법 제10조2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군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재산관리관의 공유재산 취득·처분(안)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이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공유림에 대하여는 공유림을 관리하는 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취득·처분하여야 할 재산에 대하여는 그 소관으로 할 재산관리관이 사전에 총괄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재산관리관은 제3항에 따라 취득·처분하여야 할 재산이 확정되거나 변동이 있으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영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 및 처분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

2. 1건당 기준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2천제곱미터

□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7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하여야 하는 공유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부서의 장은 그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련한 계획을 세운 후 지체 없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반영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거창스포츠파크 내 실외 골프연습장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2025 - 201
----------	------------

제출자	거창군수
-----	------

1. 제안이유

○ 거창스포츠파크 내 실외 골프연습장의 민간위탁계약이 2025. 12.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 제2호 규정에 의거 해당 시설에 대한 현 수탁자의 전문적 관리 및 안정적 운영 능력을 반영해 민간위탁 기간을 연장(재계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위탁대상 : 거창스포츠파크 내 실외 골프연습장 관리 운영
- 나. 위치 : 거창군 거창읍 심소정길 39-36
- 다. 시설현황 : 골프연습장 1동, 철탑시설, 부대시설 1식

부지면적	건축물 규모				타석수	비거리
	층수	건축면적	연면적	구 조		
3,971m ²	지상2층	258.0m ²	300.2m ²	철근콘크리트조	10타석	100m

- 라. 위탁기간 : 2026. 1. 1. ~ 2026. 12. 31.(1년)
- 마. 선정방법 : 성과평가 후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심의(서면) 선정

3. 참고사항

- 가. 민간위탁 기간 연장(재계약) 필요성
 - 1) 스포츠파크 실외 골프연습장 개축 사업 행정절차 이행(제육시설 결정 및 용도지역 변경 등 경남도 사업승인 및 고시) 지연에 따른 2026년 하반기 착공 가능
 - 2) 위탁기간 만료 도래에 따른 사업 착공시까지 시설 운영 공백 기간 발생
 - 3) 시설 사용 중지 여부에 대한 이용회원의 문의가 많고, 대다수 회원 착공 전까지 해당 시설 이용을 희망함

- 4)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 규정에 의거 공개 모집을 통한 수탁자 선정 시 해당 시설의 노후회 및 단기간 위탁 조건으로 수탁자 모집이 불투명한 상황임
- 5) 현 수탁자의 다년간 해당 시설 전문적 관리 및 안정적 운영 능력을 반영한 민간위탁 재계약 필요

나. 관계법령

- 1)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 (행정재산의 관리 위탁)
- 2)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제17조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 3)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 4)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23조 (성과평가)

다. 향후계획

- 1) 성과평가 후 민간위탁 선정 심의위원회 심의(서면) : 2025. 12.
- 2) 위수탁계약 체결 : 2025. 12.
- 3) 위탁계약 운영 : 2026. 1. 1. ~ 12. 31.

붙임 1. 거창스포츠파크 내 실외 골프연습장 민간위탁 추진계획 1부.
2. 관계 법령 1부. 끝.

- 거창스포츠파크 내 실외 골프연습장 - 민간위탁 운영 추진계획

거창스포츠파크 내 실외 골프연습장의 민간위탁 기간(2025.12.31.) 만료 도래에 따라, 해당 시설에 대한 현 수탁자의 전문적 관리 및 안정적 운영 능력을 반영해 민간위탁 기간을 연장(재계약) 하고자 함.

I 추진근거

-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17조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 (군의회 동의)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23조 (성과평가)

II 추진배경

- 전문지식과 사업수행 능력을 갖춘 현 수탁자에게 해당 체육 시설을 위탁 운영함으로써 거창군 골프 경기 진흥 및 활성화 효과 증진과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관리로 생활체육시설 저변에 기여하고자 함.

* 민간위탁 기간 연장(재계약) 필요성

- 스포츠파크 실외 골프연습장 개축 사업 행정절차 이행(체육시설 결정 및 용도 지역 변경 등 경남도 사업승인 및 고시) 지연에 따른 2026년 하반기 착공 가능
- 위탁기간 만료 도래에 따른 사업 착공시까지 시설 운영 공백 기간 발생
- 시설 사용 중지 여부에 대한 이용회원의 문의가 많고, 대다수 회원 착공 전까지 해당 시설 이용 희망
- 해당 시설 노후 및 단기간 위탁에 따른 수탁자 모집 불투명

III

위탁개요

- 위탁기간 : 2026. 1. 1.~ 2026. 12. 31.(1년)
- 위탁현황
 - 대상 : 거창스포츠파크 내 실외 골프연습장
 - 위치 : 거창군 거창읍 심소정길 39-36
 - 시설물 현황 : 골프연습장 1동, 철탑시설, 부대시설 1식

부지면적	건축물 규모				타석수	비거리	비고
	층수	건축면적	연면적	구조			
3,971m ²	지상2층	258.0m ²	300.2m ²	철근콘크리트조	10타석	100m	

- 위탁내용 : 실외 골프연습장 시설 유지관리 및 운영 전반
- 선정방법 : 성과평가 후 민간위탁 선정 심의위원회 심의(서면)
- 현 수탁자 현황

수탁자	주소	기간	비고
김성원(개인)	거창읍 동동5길 68 하나로1차 101동 901호	2022. 8. 1. ~ 2025. 12. 31.	

- 시설 사용료 : 19,362천원/년 정도
 -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에 따라 산정

IV

추진일정

- 군의회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 : 2025. 11.
- 민간위탁 의회 동의 : 2025. 12.
- 성과평가 실시 : 2025. 12.
- 민간위탁 선정 심의위원회 구성 및 개최 : 2025. 12.
 - 구성인원 : 6명(위원장 포함)
 - 위원구성 : 관련 공무원, 전문지식이 있는 대학의 부교수 이상, 세무사·변호사 등
- 민간위탁 기간 연장(재계약) 협약서 체결 및 공증 : 2025. 12.

불임2

관계 법령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 ① 군수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로서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절성을 미리 검토하여야 한다.

1. 민간위탁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민간위탁의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의 활용 가능성
5. 민간위탁하려는 사무의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민간위탁하려는 사무의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위탁하려는 사무와 관련된 민간 서비스의 공급 현황
8. 그 밖에 민간위탁의 적절성 검토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군의회 동의) ① 군수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사무를 민간위탁하려면 민간 위탁 시작 60일 전까지 민간위탁 여부에 관하여 거창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간위탁 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군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민간위탁 중인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 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경우
2. 민간위탁 중인 사무에 대하여 기존의 수탁기관과 민간위탁 기간을 연장하여 계약(이하 “재계약”이라 한다)하는 경우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군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료를 군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1. 민간위탁 사무명
2. 민간위탁의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민간위탁 사무의 내용
4. 민간위탁 시설의 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등 개요
5. 민간위탁 기간
6. 민간위탁 예산
7. 수탁기관 선정방식
8. 제4조제2항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절성 검토 결과
9. 그 밖에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에 필요한 사항

제6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① 군수는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는 제8조에 따른 거창군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민간위탁 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기구·시설·장비 및 기술수준
2. 재정 부담 능력
3. 책임능력과 공신력
4. 민간위탁 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5. 그 밖에 수탁기관의 선정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계약체결 등) ① 군수는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민간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1. 민간위탁의 목적
 2. 수탁기관의 명칭(대표자의 성명을 포함하며 개인일 경우에는 성명을 말한다) 및 주소
 3. 민간위탁 사무 명칭 및 그 내용
 4. 민간위탁 기간
 5. 민간위탁 예산 및 제19조에 따른 운영 지원 사항
 6. 수탁기관의 의무 및 계약 위반 시의 책임
 7. 종사자의 고용승계(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민간위탁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제23조(성과평가) ① 군수는 민간위탁 사무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민간위탁 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성과평가를 해야 한다. 다만, 단순 행정관리 사무로 성과평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성과평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성과평가 지표를 개발하게 하거나 직접 성과평가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